

인천지방법원 2023. 12. 19 선고 2022가단294601(본소), 2023가단206526(반소) 판결
[인건비반환청구 · 공사대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

담당변호사 홍순용

피고(반소원고)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

담당변호사 오정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범주

변 론 종 결 2023. 11. 14.

판 결 선 고 2023. 12. 19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(반소피고)가,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1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 : 원고는 피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1. 1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인천 C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, 소방 및 통신설비 공사를 수급받았는데, 원고는 2020. 12.경 피고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을 4억 원으로 하여 피고가 인부를 동원하여 전기, 소방, 통신설비 공사(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를 진행하기로 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 한다). 원고는 2021. 9.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3억 4,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, 피고는 2021. 11.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.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피고 본인과 피고가 동원한 인부들에게 지급된 노임은 총 1억 7,020만 원에 불과하므로, 원고는 위 3억 4,000만 원 중 인건비로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1억 7,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내지 목적에 관하여 ‘출력 인원 등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되, 공사 완료 후 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호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’고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조달하는 한편, 공사를 위한 작업 및 인력 관리 등의

업무를 맡았을 것으로 보이는데, 피고로서는 자신과 투입 인력에 대한 노무비 외 추가 수익 등을 기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여지가 있다.

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단순히 투입 인력에 대한 노무비 상당액만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인력 공급 및 공사 진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 중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상응하는 노무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계약은 대금 4억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하도급계약의 실질을 갖는다. 피고는 2021. 10.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잔금 6,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노무비만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그러나 마찬가지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공사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, 혹은 도급적 성격과 그 밖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,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.

원고는 ‘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약속한 인력을 이 사건 공사에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여, 원고가 2021. 10.경부터 2022. 3.경까지 직접 인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’고 주장한다.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2021. 10. 25.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관여하기로 한 공사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을,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

의하여 알 수 있는 해당 집합건물에 관한 전기, 소방 및 통신헌비 공사의 진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더하여 보면,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위해 대금을 4억 원으로 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,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성준규